홍천군 공고 제2024 - 794호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홍 천 군 수

1. 공 고 명 :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 직권말소 등록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15. ~ 2024. 4.29.(14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차명)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	송달불가 사유	등기번호
19구5819 (모닝)	KNABZ511BCT331646	김*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갈** ** *** ***	폐문부재	10918-3956-7512
134수8293 (QM6)	KNME5C2M2HP011397	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 *	폐문부재	10918-3956-7623

4. 공고내용
   - 위 자동차의 소유자는 예고기간 내 의무보험을 가입하시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말소중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가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 : 홍천군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 (☎033-430-2964)